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1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 염태영·박 정·박홍근

오세희 · 김문수 · 이기헌

김남근 • 서영교 • 이해식

박정현 • 이용선 • 김남희

박주민 • 이원택 • 황정아

김용만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

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2호" 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1호에"로 한다.

제39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0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건축법」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7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 제5조(「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를 삭제한다.
- 제6조(「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및 제2호" 를 "제1호"로 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8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기계설비법」의 개정)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10조(「도시개발법」의 개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13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제1호 또는 제2호" 를 "제1호"로 한다.
- 제14조(「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호"를 "제7조제3호"로 한다.

제15조(「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9조(「주택법」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제6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2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삭 제></u>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309호 감정평가 및	법률 제1830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결격사유) ① (생 략)	제12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2
사가 <u>제1항제2호</u> 부터 제5호까	<u>제1항제3호</u>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7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4 <u>제1호에</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	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	
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	
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 2. ~ 5. (생 략)
- ④ (생 략)
-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 5. (현행과 같음)

건축법

현 행	개 정 안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⑦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지 아니한 자</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건축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	제24조(신고의 제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	
를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	4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	
실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u><삭 제></u>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① (현행과 같음)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	
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	
실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삭 제></u>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수택된	<u> </u>	-의 ス	·격이	취소
돈	후	3년이	지나	기 이	나니한
入	ㅏ람(<u>↗</u>]]]호 및	! 제2	<u>(호</u> 에	해당
ŏ	}여	주택관리	리사등	의 기) 격이
ネイ	소된	경우는	- 제오]한다)
(5)	. 6	(생 략)		

5
<u>সা1ই</u>
⑤·⑥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인중개사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기계설비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 등</u>) ①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	
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5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	<u>제1호</u>
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	
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	
자를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시개발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조합원 등) ①・② (생	제14조(조합원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	및 해임)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결격사유)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	
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	,,
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	5
호 • 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이 취소(<u>제1호 또는</u>	<u> মা1ই</u>
<u>제2호</u> 에 해당하여 제25조제1	
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	
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	
한다.	
6. • 7. (생략)	6.•7.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법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조(발기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	
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	
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	
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2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1. <u>제7조제3호</u>

수도권정비계획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9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	
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u>아니한 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주택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	5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6조제1호
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	
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u><</u> 삭 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7. (생 략)

② ~ ④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6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	
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